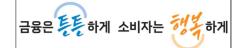


보도자료



보도	2022.7.20.(수) 조간	배포		2022.7.1	9.(화)
담당부서	감독조정국	책임자	국 장	이창운	(02-3145-8170)
	감독조정팀	담당자	팀 장	이정두	(02-3145-818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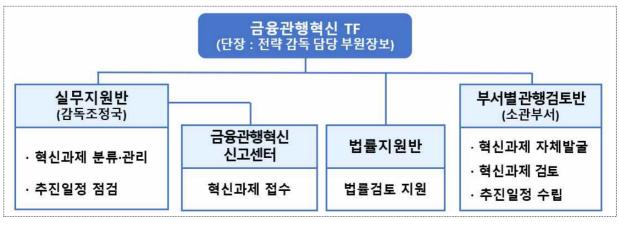
금융감독원, 금융관행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습니다.

- 금융관행혁신 TF 첫 회의(Kick-off) 개최 -

금융관행혁신 TF 개요

- □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 발맞춰 금융회사의 혁신사업을 더디게 하거나 업무 수행 등에 불확실성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
 - '모래주머니' 같은 불합리한 관행들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음
- □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「금융관행혁신 TF」를 구성하고,
 - 7.19일 10시 30분 **이복현 금융감독원장** 주재로 **첫 번째**(Kick-off) **회의***를 개최하였음
 - * 각 부문별 부원장보, 회계 전문심의위원, 감독조정국장 참석

〈금융관행혁신 TF 구성〉



Ⅱ 운영방안

- □ (추진방향) 금융회사의 혁신사업 등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,
 -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·검사·제재 관련 제도들은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개선해 나가겠음
 - 또한,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일명 **그림자 규제**들에 대해서도 **규정화** 하거나 환경변화로 실익이 없어진 경우라면 **과감히 철폐**하겠음

금융관행 주요 혁신과제(예시)

- ①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
- ②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
- ③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(일명 "그림자규제")
- ④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
- ⑤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·검사·제재 관련 사항
- □ (과제수집) ^①「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(금융감독원 홈페이지*)」 및 ^②업계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,
 - *「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」이용방법(붙임2 참고,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 바로가기)
 - ③금융감독원 자체적으로도 관행혁신 과제를 발굴

Ⅲ 향후계획

- □ 금융감독원은 **접수된 혁신과제를 속도감** 있게 **처리**하고, **추진 현황**을 **주기적**으로 점검하는 한편,
 - **금융현장**과의 **적극적인 소통**을 통해 금융부문 **혁신 수요**를 지속 파악해 나갈 계획임

붙임1 금융관행 혁신대상 및 처리절차

구분	내용							
혁신대상	 ○ 민간의 신규사업 추진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업무처리 지연 ○ 객관적 예견 가능성 없는 금융사고 등을 우려한 보수적인 감독행정 ○ 사실상 구속력으로 규정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사항(일명 "그림자규제") ○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경쟁력간 균형 조정이 필요한 사항 ○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·검사·제재 관련 사항 							
접수방법	※ 법규(법령, 감독규정), 시행세칙, 모범규준, 행정지도, 감독행정을 포괄 1 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 접수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*를 통해 제출 *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"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" 아이콘을 통해 접속 가능(붙임2 참고) 2 업계 의견수렴: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청취·접수 3 금융감독원 자체 발굴(소관부서)							
접수기간	`22.7.19일부터 1개월간							
처리절차	단계 ①혁신과제 접수, 지체발굴 감독조정국 소관부서 기속조정국 소관부서 → 기속조정국 소관부서 → 기속조정국 소관부서 → 학신과제 수용여부 검토 사리의견 제시: 직접처리 장기검토 금융위건의 불수용 • 추진일정 수립 추진현황 점검							
사후관리	□ 혁신과제 에 대한 검토의견 안내 (접수시 회신요청한 경우) □ 직접처리, 장기검토 사항에 대한 추진일정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							

붙임2

「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」 이용방법

1.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"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" 접속



2. 건의내용 작성·등록



업무자료

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

업무자료	
업무처리 절차	
공통	4
은행·중소서민금융	÷
금융투자	+
금융소비자보호법	+
보험	æ
공시	+
회계	+
외국환	+

	금융관행혁신 신고센터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관행 및	!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

- 시행세칙, 행정지도, 모범규준 등 금융감독원 소관 금융규제에 대해 누구든지 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·검사·제재업무 등 감독관행과 관련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① 참고 개선대상 행정지도,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(숨은규제), 감독관행 등

유의사항 안내

- 금융관련 법령, 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규제 관련 건의사항은 규제정보포털 >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단순 민원, 개인 고충 등 금융관행혁신과 관련이 없는 진정사항은 금융민원 >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규제건의 제출

금용관행혁신 건의 (감독관행, 제도개선 등) >	사전에고중인 시행세칙 >	사전예고중인 행정지도 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